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13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2020. 5. 12.

판결 선고2020. 7. 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두리 양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방어 등을 유통하는 중도매상인데, 원고는 D으로부터 방어를 피고가 운영하는 가두리 양식장에 일정기간 보관하여 순치시킨 후 유통하는 사업을 제안받고, D와 방어 1마리당 5,000원의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어 보관·순치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런데관·순치된 방어 5,000마리를 피고의 가두리 양식장으로부터 출하하려고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1마리당 10,000원의 보관료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출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에게 5,000만 원(= 5,000마리 × 1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5,000만 원의 보관료를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또는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와 D이 1마리당 5,000원의 보관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두계약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1마리당 10,000원의 보관료를 요구함으로써 고의로 계약위반행위를 함으로써 1마리당 5,000원의 추가 보관료를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 대하여 2,500만 원(= 추가 보관료 5,000원 × 10,000마리)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으로부터 방어 순치·보관 사업을 의뢰받고 D과 사이에 1마리당 10,000원의 보관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보관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가 보관료를 부당이득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추가 보관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을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과 2019. 4. 10. 방어 보관·순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1마리당 10,000원의 수익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D과 사이에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D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방어 출하를 위해 피고에게 1마리당 10,000원의 보관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가 일종의 제3자의 변제로서 원고와 D 사이에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민지